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 2. 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은?

1 등록기관 방문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

2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기관 내에서
본인 확인



4 등록 및 효력 발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효력 발생

3 상담 및 작성

1:1 상담을 통해
6가지 관련 사항
숙지 후
안내에 따라 작성



당신의 삶의 마무리를 생각해 보신적이 있나요?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창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가 1인
- 어디에서?** 의료기관(의료원)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 어떻게?**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가 1인
- 어떻게?**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인사를 확인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방법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표현 미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에 대한 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 2인 이상 찬성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환자의 평소 뜻을 아는 환자가족 2인 이상이 일치하는 찬성을 할 때 환자의 의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족 찬성 합의

일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지만 환자가족 찬성이 합의되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